

의안번호	제 551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1월 일 (제353회)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1월 6일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한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1
----------	-----

발의연월일 : 2017년 1월 6일

발의자 : 박한범,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최병윤,  
임병운

## 1. 개정이유

-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4조)
-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5조)
- 사용료의 감면(안 제7조)
- 사용료의 납부(안 제8조)
-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삭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나. 관련부서 협의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이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내의 교육시설(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교육장), 숙박시설(생활관), 체육시설(운동장, 테니스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연수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중단)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3.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제6조(사용료)**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연수원장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익적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 한 감면 단체가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 할 때에는 감면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대상기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공문, 허가증, 등록증, 회원·이용명단 등)
  2. 해당 기관이 주최·주관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등)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 할 경우
    -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다.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연수원시설물 사용료(제6조 관련)

시설명	사용구분	규모	사용료	비 고
생활관	○ 공무원교육관	100실	10,000원	○ 1인 1박 기준 (다음 날 13:00까지)
	○ 도민교육관	25실	5,000원	
대강당	○ 동절기(11월 ~ 5월)	약200석	150,000원	○ 1일 사용 기준
	○ 하절기(6월 ~ 10월)		100,000원	
강의실	○ 공무원 제2,제3,제4,제5,제7강의실	6실	50,000원	○ 1일 사용 기준
	○ 도민 제1강의실			
	○ 공무원 제6강의실	2실	30,000원	
	○ 도민 제2강의실			
정보화교육장	○ 50석	2실	100,000원	○ 1일 사용 기준
분임토의실		6실	20,000원	○ 1일 사용 기준
운동장		1면	70,000원	○ 1일 사용 기준
테니스장		2면	20,000원	○ 1일 사용 기준

※ 1일 사용 기준은 8시간으로 한다.

– 사용기준 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적용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별지 제1호서식]

## 사용신청서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협조 :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남: 여: )	사용기간	년 ( )	월 ( )	일 ( )
사용시설	<input type="radio"/> 대강당 ( )실 (공무원교육관, 도민교육관) <input type="radio"/> 강의실 ( )실 (공무원교육관 실, 도민교육관 실) <input type="radio"/> 문임토의실 ( )실 <input type="radio"/> 정보화교육장 ( )실 <input type="radio"/> 생활관 ( )실 (공무원생활관 실, 도민생활관 실) <input type="radio"/> 운동장 ( )식 <input type="radio"/> 테니스장 ( )면				
사용료	사용금액	원	반환시계좌		
위와 같이 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단체) (인)					
<b>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 귀하</b>					

## [별지 제2호서식]

## 사용변경(중단)신청서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b>협 조 :</b>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	(성명)		
변경·중단 사 유					
사용인원	명 (남: 여: )	사용기간	년 ( )	월 ( )	일 ( )
사용시설	<input type="radio"/> 대강당	( )실	(공무원교육관, 도민교육관)		
	<input type="radio"/> 강의실	( )실	(공무원교육관 실, 도민교육관 실)		
	<input type="radio"/> 분임토의실	( )실			
	<input type="radio"/> 정보화교육장	( )실			
	<input type="radio"/> 생활관	( )실	(공무원생활관 실, 도민생활관 실)		
	<input type="radio"/> 운동장	( )식			
	<input type="radio"/> 테니스장	( )면			
사 용 료	사용금액	원	반환시계좌		
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단체)		
			(인)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 · 공공단체 또는民間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자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신선기